
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의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환경부장관이 장기간 실내공기질을 우수하게 유지·관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정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며, 지정의 취소, 재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).
-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·재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, 지정·재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13조의2제2호 및 제16조제3항제8호의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 제12조의4는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①개정안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, ②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, ③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

내공기질 유지·관리·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이 중 안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¹⁾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로써, 환경부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그 결과가 있는 경우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, 그 결과가 있는 경우 반영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
-
- 1)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제13조(보고 및 검사 등) ①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, 시험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(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)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, 오염물질의 명칭,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·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·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신 설>	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) ① 우수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소유자등이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우수시설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.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. 1.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 2.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3.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우수시설의 재지정 취소는 제12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지정”은 “재지정”으로 본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	제12조의4(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(개정안과 같음) 1. (개정안과 같음) 2.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 3.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 ④ (개정안과 같음)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화 실)